

행정운영 개선 · 향상 및 청렴한 남구를 위한



송의2동 종합감사 결과보고



감 사 실

송의2동 자체행정감사 결과보고

I 감사실시 개요

☐ 감사범위

- 수감기관 : 송의2동 주민센터
- 감사범위 : 2014. 3. 1 ~ 2017. 3. 31까지 추진한 업무전반

☐ 감사기간 : 2017. 4. 4 ~ 4. 7 (4일)

☐ 감 사 반 : 감사팀 3명

☐ 구민감사관 현황

- 성 명 : 조 ○ ○
- 일 시 : 2017. 4. 4 (1일)

☐ 중점 감사사항

- 주민센터 운영실태 전반
- 세출예산 집행실태 및 물품구입 등 적정여부
- 저소득층 생활보호지원 대책의 효율적 추진실태
- 각종업무(서무,주민등록,민방위,청소 등) 추진실태

II 감사결과

1. 감사처분

가. 분야별 처분내역

구 분	처분 현황 (건)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			신분상 조치	비고
		계	시정	주의	계	추징· 회수 (세입)	환급· 감액		
계	7	7	1	6					
주민자치센터									
주민등록	2	2		2					
민 방 위	1	1		1					
회 계	3	3		3					
기 타	1	1	1						

나. 세부 처분내역

연번	분야별	제 목	처분내역			비고
			행정상	재정상 (천원)	신분상	
1	주민등록	주민등록 등 과태료부과 사전통지 미 이행	주의			
2		주민등록 일제정리 추진 부적정	주의			
3	민 방 위	자체교육 인정자 관리 부적정	주의			
4	회 계	회계관직 대리업무 지출서류 부적정	주의			
5		대가의 지급(준공금) 세금계산서 수리 부적정	주의			
6		반장 명절상여금 지급방법 부적정	주의			
7	기 타	개인영상정보제공 업무처리 부적정	시정			

2. 분야별 지적사항

주민등록분야

【주민등록 및 가족관계 신고(지연)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미 이행】

- 과태료를 부과 할 때에는 「질서행위 위반법」 제16조 및 제18조에 따라 서면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의견 제출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범위 내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 송의2동에서는 2014년부터 현재까지 주민등록 과태료(총143건, 5,417천원), 가족관계 등록 과태료(총5건, 144천원)을 부과하면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의 통지(결재) 없이 과태를 감경 부과 징수함.

처분요구 : 주의

-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업무연찬 실시 및 주의 촉구

【주민등록 일제정리 추진 부적정】

-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관할 구역내에 거주하는 주민을 정확히 파악, 실제 주민의 거주상황과 주민등록사항이 일치하도록 주민등록표를 정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 일제정리에 따른 전수조사는 전 세대에 대한 세대별명부를 작성 모든가구를 방문하여 주민등록표 기재사항과 실제거주 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 송의2동에서는 2015년 주민등록 일제정리 추진 시 3개통 947세대에 대해 세대주 확인 없이 통장의 서명,날인만으로 사실조사를 부적정하게 실시하였다.

처분요구 ⇒ 주의

-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업무연찬 실시 및 주의 촉구

민 방 위 분 야

【 자체교육 인정자 관리 부적정】

-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34조(자체 교육훈련 인정 등) 규정에 따라 그 승선·재직 또는 피교육 중인 기간의 민방위 교육훈련은 소속 선장이나 직장의 장이 실시하는 자체 교육훈련으로 갈음하고, 소속 선장이나 직장의 장은 국민안전처 장관이 정한 교육시간 이상의 자체교육훈련을 실시하여 별지 제19호서식의 자체 직장 교육훈련 확인서를 해당자의 거주지 읍·면·동장이나 소속 직장 민방위 대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있다.
- 송의2동에서는 자체교육 인정 대상자 명부를 관리하면서 자체교육 훈련 실시에 대한 해당 직장 등의 확인서 등 증빙서류가 없음에도 자체교육 훈련을 참석한 자로 인정하는 등 부적정하게 관리하였다.

처분요구 ⇒ 주의

- 민방위 교육인정자 등 관리 철저 및 업무 연찬 실시

회 계 분 야

【 회계관직 대리업무 지출서류 부적정】

- 「인천광역시 남구 재무회계규칙」 제3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5호에 따르면 동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에 있어 재무관은 동장,지출원은 회계 업무 담당으로 되어 있으며,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남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직을 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송의2동에서는 2015.4.27. ~ 2016.12.2. 기간 도시가스 요금 지출 등 29건에 대해 재무관(행정 5급 ○○○)의 휴가 등으로 회계관직을 변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출결의서에 재무관(행정5급 ○○○)의 인장을 날인한 사실이 있다.

처분요구 ⇒ 주의

- 「인천광역시 남구 재무회계 규칙」 준수하도록 직원 업무연찬 실시

【 대가의 지급(준공금) 세금계산서 수리 부적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제 8절 계약 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지·해제 지연배상금에 따르면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계약서상 준공신고서 제출기일을 말한다)안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 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연배상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연 배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며

○ 계약담당자는 산출된 지연배상금은 계약 상대방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나 그 밖의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지연배상금은 공사금액이 감소한 것이 아니라 공사지연에 따른 과태료 성격의 금액으로, 준공금 지급 시 채주를 분리하여 세입징수관(그외수입)과 계약 상대방에게 입금(수납)처리 한다.

○ 송의2동에서는 2016.4.1. (주)○○○○과 「동 청사 화장실 개·보수공사」 계약서 작성(준공일:2016.4.18.)하였으나 2016.4.23. 준공으로 5일 공사 지연되어 공사금액의 1/1,000인 96,800원의 지연배상금은 세외수입으로 부과처리 하였으나, 지연배상금이 감액된 금액으로 청구된 세금계산서를 수리하여 처리한 사실이 있다.

처분요구 ⇒ 주의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준수하도록 직원 업무연찬 실시

【 반장 명절 상여금 지급방법 부적정】

○ 인천광역시 남구 재무회계 규칙 제50조(지출 및 지급의 원칙) ③항에 의하면 지출원은(일상경비출납원을 포함한다) 각종 대가 등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정당한 채권자에게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 송의2동에서는 2014년부터 355명 반장 명절상여금 8,875천원을 지급하면서 계좌입금하지 않고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있음.

처분요구 ⇒ 주의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준수하도록 직원 업무연찬 실시

기 타 분 야

【개인 영상정보 제공 업무처리 부적정】

○ 「남구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 제32조(개인영상정보 이용·제3자 제공 제한 등) 제5항에 의하면 개인영상정보를 제공받은 기관은 개인영상정보의 보유기간 만료,목적 달성 등의 경우 제공받은 개인영상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하고 그 결과와 처리일자를 제공한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파기에정일자가 도래할 경우 파기기간 연장을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다시 요청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6항에 의하면 개인영상정보를 제공한 기관은 제공이후 파기 등 결과 회신 여부를 분기 이내 단위 기간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제공받은 기관이 파기 등 결과와 처리일자를 회신하여 오면 이를 개인영상정보 관리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 송의2동에서는 6건의 개인영상정보를 제공하였으나 제공받은 기관에서 파기 결과를 회신하지 않았음에도 점검을 미실시한 사실이 있음.

처분요구 ⇒ 시정

- 개인영상정보를 제공한 6건에 대해 파기 등 결과 요청 후 회신을 받아 처리하시고, 관련규정을 숙지하시어 향후 개인영상정보 제공 업무 철저